



「2024년 시험대비」

세법 출제영역별 모의고사 및 해설(2)

| 김용민 교수 |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체계적 세법강의!! 세법 김용민교수의 강의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상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출제영역 : 지방세법 난이도 : 중
[해설] 정답 : ①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09.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②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한다.
- ④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제영역 : 지방세법 난이도 : 중
[해설] 정답 : ③

-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출제영역 : 지방세법 난이도 : 하
[해설] 정답 : ①

-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1.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기분(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 ②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 ③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제영역 : 지방세법 난이도 : 중
[해설] 정답 : ①

- ① 1기분(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12.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세율은 가감할 수 없다.
- ②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이다.
- ④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출제영역 : 지방세법 난이도 : 중
[해설] 정답 : ②

- ②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레저세는 제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출제영역 : 지방세법 난이도 : 중
[해설] 정답 : ②

-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다음호에 계속>